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이정문・김동아・채현일

황명선 · 강훈식 · 이연희

어기구 · 조승래 · 한민수

홍기원 · 김용만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,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(헌법재판소 2024. 7. 18. 선고 2022헌가6 결정).

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(벌칙) ① 「상법」 제401	제39조(벌칙) ①		
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			
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			
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			
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			
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			
작성 ·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			
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			
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			
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			
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			
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			
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			
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</u>		
	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		
	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		
	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		
	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		
	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		
	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		
	원으로 한다.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